



3255 Wilshire Blvd., Suite 902  
 Los Angeles, CA 90010  
 (213) 389-2077  
 For California Relay Service TTY: (800) 735-2929  
 www.mhas-la.org



공정 주거 (FAIR HOUSING):  
 바로 그 법!

*A nonprofit organization protecting and advancing the legal right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 이 달의 공정 주거(Fair Housing) 팁

### 팁 #4 – 의료용 대마초

**세입자:** "저는 5년동안 의료용 대마초를 아파트 건물에서 사용해왔지만 한번도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오늘 임대인이 세입자가 불법 약물을 사용하거나 세입자를 방문한 손님이 불법 약물을 사용하면 퇴거 조치 된다고 알리는 공고를 게시했어요. 인근에서 점차 증가하는 불법 약물 사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임대인이 그렇게 한 건 이해가 되는데요. 이 규칙이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만 대마초를 사용하는 저한테도 적용이 될까요?"

법률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법과 캘리포니아법 사이에는 상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몇 년 전 부터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고, 그 후 최근에는 여가용 대마초의 사용도 합법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에서는 의료용 대마초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합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은 연방법하에서 범죄입니다. 대마초 사용이 연방법하에서 범죄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대마초 사용을 금하는 임대인이 의료용 대마초의 사용을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승인할 수도 있지만, 공정 주거법에 의하여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규정된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대마초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연방법을 핑계로, 세입자의 보호 대상 특성을 근거로 임대를 거절하거나 퇴거 조치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의 대마초 사용은 묵인하면서, 대마초를 사용하는 장애를 가진 세입자를 퇴거 조치하는 것은 공정주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공공 주택이나 섹션 8 처럼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주택에서는 여전히 대마초 사용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택을 임대 하려는 신청자는 그들이 대마초 사용자인 경우 거절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정부법에 의거하여,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공 주택과 섹션 8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주택 당국(PHA)은, 그들 나름의 방침에 따라, 기존의 거주자들이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퇴거 조치를 시행 할 지 주거 보조를 중단할 지 케이스 별로 결정하게 됩니다.

**취해야 할 조치:** 귀하의 임대인이 귀하의 대마초 사용을 이유로 퇴거 시키겠다고 협박한다면, 귀하께서는 장애와 관련해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을 참작해서 예외로 적용해 달라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은, 해당 세입자의 대마초 사용이 다른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특히, 기꺼이 이 편의 제공을 승인할 것 입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임대인이 귀하를 퇴거 조치하려는 진짜 이유가 보호 대상 계층인 점에 있다고 의심을 하신다면, 이를 근거로 주거 차별로 제소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에 이미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의료용 대마초 사용에 관한 PHA 의 방침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거 차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역 공정 주거 기관,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부(DFEH), 또는 미국 연방 주거 및 도시 개발부(HUD)에 불만(complaint)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HUD에 불만을 접수하시려면, 800-669-977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complaint-process](http://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complaint-process)

DFEH에 불만을 접수하시려면, 800-884-168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dfeh.ca.gov/complaint-process/file-a-complaint/](http://www.dfeh.ca.gov/complaint-process/file-a-complaint/)

공정 주거법은 다음 특성을 근거로 한 거주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출신 국가, 피부색, 성별, 혼인 여부\*, 혈통\*, 가족 상황, 장애, 성적 지향\*, 소득원\*.

\* 표시는 연방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캘리포니아에서 차별이 금지된 항목을 나타냅니다.

**고지사항:** 공정 주거법 이 달의 팁 프로그램은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법적인 자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MHAS, 지역 공정주거의회 또는 기타 개인적으로 선택한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공정 주거 이달의 팁은 HUD 의 주거 및 도시개발 공정 주거 프로그램(Fair Housing Initiatives Program)의 보조 기금(보조 기금 #FEOI180041-01-00)으로 제공됩니다.